

개정개요

※ 국세 반영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표준 차감 대상에
○ 직접투자 외국법인세액*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 규정 * 「법인세법」 제57조	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
	○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 규정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* 추가 * 「법인세법」 제57조의2

 개정 내용

-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(직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차감과 동일)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,
 -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(^{현행}직접+간접투자 → 개정직접+간접투자)

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

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